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8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로 하고,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6(중전의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별지 제33 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항 중 “별표 10”을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립시설 검사기관”을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51-41-04란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를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로 하고, 같은 호의 51-41-04란 다음에 51-41-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별표 4의3 제2호 중 “51-03-09”를 “51-03-08”로 하고, 같은 호의 51-41-04의 폐기물의 종류란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를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 폐패널”로 하며, 같은 호의 51-41-0

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1”을 “R-2-1, R-3-1”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41-04란 다음에 51-41-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	------------	--	-------

별표 5 제3호가목3) 중 “함유하는”을 “들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거)(5)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5의3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2)다)(2) 본문 중 “저위발열량”을 “저위발열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별표 10 제2호 설치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기울기
- 지하수배제시설의 설치내용
-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용,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 매립가스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설치계획
- 내부진입도로의 설치내용
-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안정성

별표 10 제2호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화장비의 설치·관리실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의 누출 여부
-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내용
-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 매립작업 설계도서에 따른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 정도
-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설치의 적정 여부
- 복토두께
- 침출수위
- 매립층의 함수율
-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1 차	2 차	3 차	4 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30조의2 제7항제2호	지정 취소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4호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취소			
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6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법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7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 제7항제8호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의 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하거나 법 제5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와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별지 제4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3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6제1항제1호”로,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6제1항제2호”로,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3서식(중전의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별표 10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보건,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2. 시설·장비 요건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2) 장비	가) 광과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로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실험실 및 장비·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0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시 검사

라.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유지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

## (      년도)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보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공동주택명(아파트 또는 건물명)	
	⑦ 세대수		⑧ 사용승인일	
	⑨ 주소(배출현장)			

생활폐기물 위탁계약 정보	⑩ 계 약 내 용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품목		수거주기	
	⑪ 수탁처 리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허가/신고사항			

### ⑫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량(kg)

월간	총 계	㉠ 종이류	㉡ 유리병	㉢ 금속캔	㉣ 고철류	㉤ 플라 스틱	㉥ 투명 PET	㉦ 발포 수지류	㉧ 비닐 포장재	㉨ 의류	㉩ 전자 제품	㉪ 기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뒤쪽)

## ⑬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 현황

구분	수집운반업체명	재활용업체명	처리량(kg)	비고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품목5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란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주체의 상호(명칭)를 적습니다.
- ⑦란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만 적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탁처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는 ⑩, ⑪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 ⑫란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품목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21호의7서식]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정 50일(변경지정인 경우 10일)
------	------	------	----------------------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 내용	검사대상 시설의 종류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에 따라  
 제41조의5제2항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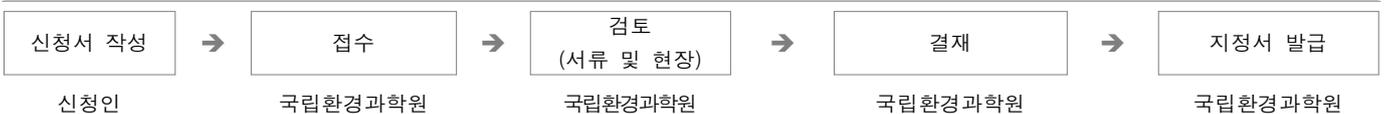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라.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21호의8서식]

(앞쪽)

제 호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기술인력	
시설	
장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뒤쪽)

## &lt;변경 사항&gt;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 &lt;처분 사항&gt;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 &lt;참고 사항&gt;

연월일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의10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재발급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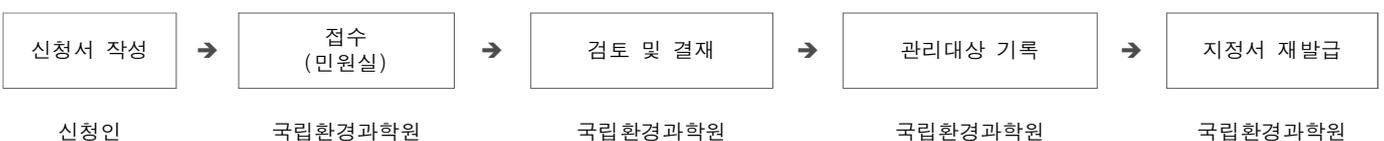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전문적·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환경부령 제89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수입등”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를 “있는”으로 한다.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혈액·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